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및 연구과정 운영지침

시행: 2023.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법학박사과정과 연구과정 학사운영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확립하여 박사과정생과 연구과정생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서 한국법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대학원 법학박사과정은 글로벌 기업법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 본 대학원은 법학박사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 각 과정에는 연구기관, 산업체 및 정부기관과의 협동과정 그리고 학과 간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연구기관, 산업체 및 정부기관과의 협동과정은 경희대학교 총장과 해당기관의 장 사이의 협약에 의해서 개설한다. 학과간의 협동과정은 대학원의 해당학과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개설한다.
- 본 대학원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전문분야의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전공영역의 구분과 강좌)

- 본 대학원 박사과정에는 글로벌 기업법학 계열(제1영역), 공법학 계열(제2영역), 사법학 계열(제3영역), 형사법학 계열(제4영역), 기초법학 계열(제5영역), 특수법학 계열(제6영역) 등 6개의 법학전공영역을 둔다.
- 전항의 각 영역은 개설강좌의 관련성을 표기하기 위해 세부전공을 두며, 세부전공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박사과정 등의 조직

제4조(조직)

- 본 대학원 박사과정의 조직은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주임교수 등으로 구성하며 관련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 박사과정과 관련된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박사과정생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경희법학연구소를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박사과정의 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주임교수 외 본 대학원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은 박사과정의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본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임교수가 되며 회의소집은 주임교수가 한다.

제6조(관할업무 및 의결)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입학전형
 - 전공시험
 - 학점인정
 - 선수 및 추가이수학점의 감면
 - 학생징계
 - 운영규정의 개정
 - 기타 박사과정 및 연구과정과 관련된 사항
-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입학자격 및 입학시험

제7조(입학자격)

박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자로 한다.

제8조(입학전형방법)

- ① 박사과정의 입학전형방법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② 입학전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9조(구술시험)

구술시험은 박사과정의 주임교수에 의하여 위촉된 전임교수 3인 이상을 시험위원으로 하여금 법학전반의 전문지식에 대하여 구술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각 시험위원은 독립하여 응시자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4장 편입학

제10조(지원자격)

국내외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본 대학원 박사과정에 편입학 할 수 있다.

제11조(전형방법)

편입학 전형은 본 규정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학점인정 등)

편입한 자는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1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13조(수업연한)

편입학한 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2개 학기 이상을 수학하여야 한다.

제5장 학적 변동

제14조(휴학)

- 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및 임신·출산·육아(최대 2개 학기,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양육에 한함)으로 인한 휴학과 해외파견 또는 지역권 변경 등 전근으로 인하여 특별휴학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제2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복학)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16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제적)

본 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제적 의결된 자

제6장 전공분야와 논문지도교수

제18조(전공분야의 선택과 변경)

- ① 박사과정생은 전공분야를 선택하여야 하며, 전공분야는 제3조의 6개 계열별 영역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박사과정생은 전공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전공분야의 변경으로 인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박사과정생이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에 전공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경우 주임교수는 변경사유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전공분야의 변경을 허가한다.

제19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및 위촉)

- ①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수로,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20조 및 본 운영지침 [별표 3]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박사과정생은 입학 후 2학기 내에 논문지도교수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주임교수는 학생이 신청한 교수를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한다. 단,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 학기에 논문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2명을 초과하여 위촉하지 않는다.
- ④ 위촉된 교수는 신청학생과 면담하여 그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논문지도교수 수락서를 작성한 뒤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논문지도교수 연구활동에의 참여)

교수의 연구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연구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논문지도교수의 연구과제에는 박사과정생 1명 이상을 공동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21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임교수 및 새로 신청한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강 좌

제22조(강좌의 개설)

- ① 박사과정의 모든 강좌는 학기단위로 개설하되 동일한 명칭의 강좌는 4학기 내에 다시 개설할 수 없다.
- ② 동일 교수가 동일 학기에 박사과정을 위해서 2개 이상의 강좌를 개설할 수 없다.
- ③ 박사과정의 강좌는 3시간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박사과정의 주임교수는 수강신청기간 전에 당해 학기에 개설될 강좌명과 담당교원, 강좌의 유형 및 기타 강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강좌담당교원 및 자격)

- ① 본교 전임교원이 대학원 강좌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본 운영지침 [별표 3]의 계열별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대학원 강좌를 담당하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의 연구실적을 확인하여 강좌 담당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전임교원은 원칙적으로 임용 시에 지정된 전공영역의 강좌를 담당한다.
- ⑤ 전공영역과 관련된 전임교원의 수가 복수인 경우 해당교원들이 책임시수, 관심주제 및 전 학기에 담당하였던 강좌의 유형 등을 참작하여 개설강좌를 정한다.
- ⑥ 수강생 3인 미만 강좌 담당교수의 시수는 원장의 승인을 통해 수강인원수로 시수를 적용한다.
- ⑦ 전항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주임교수가 책임시간의 수, 관심주제 및 종전 학기에 개설하였던 강좌유형을 참고로 해서 강좌의 분담을 해당교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강좌담당교원의 관심분야의 공시)

주임교수는 박사과정생의 편의를 위하여 강좌담당교원의 전공분야 및 학문적 관심주제를 별도로 공시할 수 있다.

제25조(강좌의 유형)

박사과정의 강좌는 강의형 강좌, 문답식 강좌, 세미나식 강좌 등의 형태로 개설할 수 있다.

제26조(가상강좌)

- ① 강좌담당교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인터넷 기타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강좌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의하여 가상강좌를 개설하려는 담당교원은 강좌개설 1학기 전에 인터넷상의 주소, 강좌명, 강좌내용의 개요, 성적평가방법 등을 주임교수에게 보고하여 한다.

제27조(강좌의 실시방식 등)

- ① 강좌는 원칙적으로 담당교원 1인이 지정된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에서 수강생에 대하여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의 교원이 동시 또는 순차로 하나의 강좌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전항에 의하여 합동강좌 또는 공동강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교원 중 1인을 책임교원으로 지정하여 강좌개설 1학기 전에 강좌명, 강좌내용의 개요, 성적평가방법 등을 주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어강좌와 특별강좌의 개설)

주임교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영어강좌와 특별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8장 수업연한 및 학점의 취득

제29조(수강의 자유)

- ① 박사과정생은 본 대학원 박사과정에 개설되는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 ② 박사과정생은 주임교수에게 특정과목의 강좌의 개설을 건의할 수 있다.
- ③ 박사과정생은 논문지도교수가 지정하는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제30조(수업연한)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31조(이수학점)

- ① 박사학위과정수료의 최소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
- ② 박사학위과정의 학기당 신청 가능한 최대학점은 9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 학기의 평점이 A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제32조(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박사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타 대학원에서의 취득학점은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단, 타 대학원의 강의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주임교수의 사전 승인만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33조(세부전공분야의 이수요건)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제3조의 6개 전공영역의 개설강좌 중에서 1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4조(추가이수학점)

- ①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석사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전문석사 자격이 없는 자는 12학점 이상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 졸업생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동일계의 경우 6학점 이상, 비동일계의 경우 12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국내외 대학원의 법학 박사과정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편입한 자는 전항

의 추가이수학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선수학점은 수강신청학점,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④ 추가이수학점은 운영위원회 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정하는 본교 석사과정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선수학점 및 추가학점의 취득면제)

① 논문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는 선수과목학점 및 추가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면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장 논문지도와 공개발표

제36조(논문지도와 지도학점)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위논문주제와 관련하여 피 지도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 한다.

②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하는 박사과정생은 논문지도학점 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공개발표에 통과한 자는 논문지도학점 2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지도 학점을 합격(P) 또는 불합격(NP)으로 평가하고 소정의 논문지도 학점부여 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37조(공개발표)

① 학위논문심사청구자는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하려는 학기에 논문주제에 관하여 공개발표를 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공개발표신청서는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개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발표 이전까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로부터 논문예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공개발표자는 발표예정일 1주일 전까지 완성된 발표문과 그 개요를 5부 이상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공개발표의 심사)

① 논문심사자로 예정된 전임교수는 공개발표에 임하여 당해 공개발표자의 논문예비계획서의 기재내용을 고려하여 발표내용을 심사·논평한다.

② 공개발표의 합격여부는 논문심사예정자 전임교원의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논문지도교수는 그 결과를 소정의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③ 공개발표의 합격은 공개발표를 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해서 5개 학기 동안 유효하다. 단 공개발표를 한 연구주제와 다른 주제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개발표를 해야 한다.

제39조(대학원생의 참가의무)

박사과정생은 재학기간 중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2회 이상 동료대학원생의 공개발표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장 종합시험

제40조(원서의 제출 등)

① 외국어 및 전공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전공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재학 중인 학기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41조(시험의 종류)

종합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과목에 한해서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제42조(시험과목)

박사과정의 시험과목은 공통기초 1과목, 전공선택 4과목으로 한다.

제43조(전공과목의 선택조건)

- ① 종합시험응시자는 본인의 세부전공분야에 해당하는 과목을 1과목 이상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 ② 논문지도교수는 피 지도학생에 대하여 특정과목을 종합시험의 전공선택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시험의 방법)

종합시험의 전공영역별 필기시험의 방법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영역의 특성이나 시험과목의 성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문제의 출제)

- ① 주임교수는 응시자의 전공 및 선택과목을 고려하여 그 전공영역의 담당교수를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 ② 출제위원은 5개 이상의 문제를 출제하되 각 문제에 일련번호를 붙여서 이를 밀봉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제46조(시험문제의 채택)

- ① 주임교수는 출제위원으로부터 받은 밀봉된 문제봉투를 개봉하지 아니한 채 문제번호를 지정하여 문제를 지정한다.
- ② 주임교수는 시험실시 이전 문제봉투를 개봉하기 직전에 문제 지정 번호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7조(채점과 합격)

- ① 종합시험의 채점은 출제교수에게 의뢰한다.
- ② 80점을 기준으로 과목합격을 결정하되 종합시험은 응시과목 전부에 대해서 합격해야 한다.
- ③ 과목합격은 그 과목합격을 받은 학기로부터 박사 재학연한까지 유효하다.

제11장 학위청구논문의 제출과 심사

제48조(논문제출자격)

- ① 일반대학원 학칙 제33조 각 호의 자격요건 및 본 규정의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박사과정의 수료자는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당해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2편 이상을 등재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하며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기로 확정된 것도 포함할 수 있다. 단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이를 적용한다.

제49조(논문심사위원회)

-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5인(논문지도교수 포함)의 박사학위 자격이 있는 전임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문인사로 구성한다.
- ② 논문심사위원은 학위논문청구 학생의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주임교수가 위촉을 의뢰한다.
- ③ 전항의 경우 논문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을 논문심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고,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자를 논문심사위원 후보로 추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임교수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④ 전항에 기해서 추천된 논문심사위원후보에 의해서 적실한 논문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임교수는 당해 논문지도교수에게 새로운 심사위원후보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주임교수는 추천된 심사위원 후보 중 1인을 위원장후보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0조(심사위원명단의 공개)

주임교수는 당해 학기 각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논문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1조(심사의 방법)

-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논문에 대한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② 심사위원은 기한을 정해서 논문의 형식 및 내용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52조(심사의 종결)

- ① 학위논문심사의 합격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각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종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의 결과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장 장학생 추천 및 선발

제53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장학생은 배정된 인원을 세부전공분야별로 안배하여 각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주임교수가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장 연구활동의 지원 및 학생자치활동

제54조(연구활동의 지원)

- ① 주임교수는 박사과정생의 연구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논문집 발간,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한다.
- ② 박사과정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희법학연구소와 그 산하의 각종 연구센터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하여야 한다. 박사과정생들의 연구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경희법학연구소와 그 산하의 각종의 연구센터는 필요한 연구공간을 제공하며 아울러 전문분야별로 별도의 연구공간을 마련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한다.
- ③ 박사과정생들의 국제적인 연구활동을 돕기 위하여 외국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을 권장·지원한다. 외국대학에서의 학점교류프로그램 또는 외국학술회의에 참여할 경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박사과정생들이 논문주제와 관련된 연구논문을 외국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자치활동의 자유)

- ① 박사과정의 자유로운 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자치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제공한다.

제14장 전문분야의 연구과정

제56조(목적)

본 대학원에서 전문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생을 선발하여 사회에서 필요한 법률실무를 익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과정을 설치한다.

제57조(조직 등)

연구과정을 위하여 연구과정의 주임교수와 관련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제58조(지원자격 및 전형)

- ① 국내외 4년제 대학의 졸업자(졸업예정자)나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연구생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선발한다.

제59조(수업연한과 이수학점)

- ① 전문분야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 ② 전문분야 연구과정의 총 이수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60조(교육과정)

- ① 전문분야 연구과정은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분야 또는 본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수연구과정 중에서 전문분야를 결정한다. 연구과정 입학생은 입학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주임교수에게 전문분야의 연구계획과 수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분야 연구과정의 교육과정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과 통합하여 이루어진다.

제61조(논문지도교수의 위촉)

- ① 연구과정생은 입학 후 논문지도교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임교수는 학생이 신청한 교수를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2조(수료증의 발급)

전문분야 연구과정생이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소정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구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3조(기타)

연구과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장 보 칙

제64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및 일반대학원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에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에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9월 1일에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에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에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에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에 시행한다.

부 칙

본 지침은 2019년 9월 1일에 시행한다.

(경과조항) 제34조는 2019 후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지침은 2023년 3월 1일에 시행한다.

[별표 1] 학위과정 개설과목

제1영역 : 글로벌 기업법학 계열

1. 상법(Commercial Law) 전공

상법일반이론, 상행위법 연구, 상법총칙·상행위법 관례연구, 회사법연구, 회사법특수연구, 회사법판례연구, 보험법연구, 보험법특수연구, 보험법판례연구, 해상법연구, 해상법특수연구, 해상법판례연구, 유가증권법연구, 유가증권법특수연구, 유가증권법판례연구, 회사법비교연구, 한국상법사, 영미회사법, 프랑스상사법, 독일주식법, 독일상사법, 미국통일상법전, 지급결제관련법연구, 증권거래법연구, 중소기업법, 금융거래법연구, 국제금융법연구, 구조회금융법제연구, 기업도산법연구, 약관법연구, 약관법특수연구, 국제해사조약연구, 국제거래법연구, 항공법, 비교상법연구, 상법특수연구, 국제운송법연구, 전자상거래법연구, 전자상거래법특수연구, 국제전자상거래법 사례연구, 비교상법연구, 상법연구지도, 상법특수연구, 보험해상법연구, 보험해상법판례연구, 기술금융법연구, 자본시장법연구

2.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전공

지적재산권법일반연구, 지적재산권법판례연구, 비교지적재산권법연구, 국제지적재산권법연구, 지적재산권소송연구, 특허법특수연구, 상표 및 디자인보호법특수연구, 저작권법특수연구, 부정경쟁방지법특수연구, 신지적재산권법연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연구, 특허쟁송법특수연구, 컴퓨터법특수연구, 엔터테인먼트법연구, 미술과 법, 일본지적재산권법특수연구, 미국지적재산권법특수연구, EU지적재산권법특수연구, 국제거래와지적재산권법연구, 중소기업과 지적재산권법연구, 산업재산권법특수연구

3. 조세법(Tax Law) 전공

조세법일반이론, 조세법특수연구, 국세기본법연구, 지방세법연구, 상속·증여세법연구, 법인세법연구, 소득세법연구, 조세론, 미국세법연구, 조세법판례연구, 국제조세연구, 부가가치세법연구, 조세쟁송법연구, 세무관리연구, 기업조세전략연구, 인수합병세무연구, 부동산세법연구, 관세법연구, 조세법론, 법인세법

4. 노동법(Labor Law) 전공

노동헌법론, 노동기본권, 노동보호법, 고용관계법연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관계법, 노동단체법, 노동쟁의조정법, 개별적근로관계법, 집단적노사관계법, 부당노동행위연구, 근로계약법연구, 근로시간법연구, 임금법연구, 노동자재해보상법연구, 노동보험법연구, 노동재판법연구, 단체협약연구, 노동법사례연구, 노동법연구강좌, 노동법특수연구, 근로기준법연구, 근로기준법판례연구, 판례노동쟁의법연구, 판례단체협약법 연구, 노동법연구세미나, 국제노동법연구, 비교노동법, 국제노동관계법연구, 국제사회법연구, 독일노동관계법연구, 프랑스노동관계법연구, 미국노동관계법연구, 일본노동관계법연구, 외국노동판례연구, 노동법판례연구, 노동법기초이론, 노동법각론,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지도, 노동법특수이론

5. 경제법(Economic Law) 전공

경제법 일반, 경제법특수연구, 독점금지법, 소비자보호법연구, 소비자보호법론, 기업규제법, 비교경제법연구, 경제법특수문제연구, 소비자보호법일반연구, 소비자보호법특수연구, 경제법일반이론, 법과 경제, 경제법세미나, 제조물책임법연구, 제조물안전법연구

6. 환경법(Environmental Law) 전공

환경법일반이론, 환경법특수연구, 환경법세미나, 환경영향평가법, 개발과환경, 무역과환경, 미국환경법연구, 유럽환경법연구, 환경공학과법, 환경과기업, 환경소송및분쟁사례연구, 수질 및 토양오염규제법, 환경법철학및윤리, 환경윤리와법, 환경법연구지도

7. 인터넷 및 정보기술법(Internet & Information Technological Law) 전공

정보통신법일반연구, 정보통신법특수연구, 정보통신법비교연구, 정보통신법사례연구, 사이버세계와법윤리, 정보사회와법이론, 인터넷법세미나, 정보기술법연구지도

8. 국제법(International Law) 전공

국제법일반이론, 국제법판례연구, 국제법연습, 국제법사, 국제조직법, 국제인권법, WTO법, 국가관할권, 국가승계법, 국제책임연구, 국제조약법, 국제연합헌장연구, 해양법, 전쟁법, 유럽연합법, 국제법특수문제연구, 문화재보호와국제법, 국제분쟁해결방법, 국제환경법, 국제금융기구법, 국제법과세계법, OECD법, 영공법, 국제인도법, 국제항공·우주법연구, 국제해양법연구, 국제법판례연구, 국제법사례연구, 국제형사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특수연구, WTO협정연구, 외국통상법연구, 지역경제공동체법연구, 국제통상분쟁사례연구, 무력충돌시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경제분쟁해결법연구, 국제기구연구, 국제법연구지도, 국제분쟁해결법연구, 국제운송법연구, 국제인권법연구, 국제법특수연구, 국제법특수연구II, 국제법특강, 국제투자법연구

9.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 전공

국제사법일반이론, 국제사법특수연구, 국제사법비교연구, 국제사법세미나, 국제사법연구지도

10. 비교법(Comparative Law) 전공

영미법기본원리, 북한법연구, 북한통상관련법연구, 북한민사법연구, 북한공법연구, 북한의법과사회, 일본법연구, 일본법사연구, 일본공법연구, 일본의사법연구, 중국법연구, 중국공법연구, 중국통상관련법연구, 중국사법연구, 라틴아메리카제국의법, 동남아시아제국의법, 아프리카제국의법, 독일사법강독, 독일공법강독, 독일형법강독, 독일법연구, 독일의법과통일, 스위스법연구, 프랑스사법강독, 프랑스공법강독, 프랑스형법강독, 프랑스법연구, 미국법연구, 미국사법연구, 미국공법연구

11. 글로벌 기업법(Global Business Law) 전공

글로벌 기업법학 계열에 열거된 과목

제2영역: 공법학 계열

1. 헌법(Constitutional Law) 전공

헌법일반이론, 헌법학방법론, 비교헌법론, 기본권론, 평등권론, 표현의자유론, 프라이버시론, 사회적기본권론, 경제헌법론, 외국헌정사, 한국헌정사, 개별국가헌법, 한국헌법론, 국민투표제도론, 통치구조론, 권력분립론, 지방자치연구, 공직제도론, 법치국가론, 긴급헌법, 언론법, 헌법재판연구, 대의제도론, 선거제도연구, 정부형태연구, 일반국가론, 헌법사상사연구, 헌법보장제도론, 통치기구론, 위헌법률심판제연구, 헌법판례연구, 사회국가론, 연방국가론, 헌법철학연구, 분단국가의 통일헌법론, 정부형태론, 비교헌법론, 비교헌법연구, 기본권비교연구, 기본권특수연구, 헌법기초이론연구, 헌법보장제도론, 헌법사, 헌법연구지도, 헌법재판제도론, 헌법특강, 헌법특수연구, 헌법학방법론, 경제헌법론, 정치적기본권론, 정치관계법연구, 입법과정론, 헌법소송법론, 헌법소송법비교연구

2. 행정법(Administrative Law) 전공

행정법일반이론, 행정법특수연구,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대륙행정법특강, 행정구제제도연구, 행정쟁송법연구, 국가배상연구, 영미행정법특강, 행정행위론, 행정법판례연구, 비교행정법론, 토지공법, 환경행정법연구, 규제행정법연구, 경제행정법연구, 복지행정법연구, 질서행정법연구, 공용부담법연구, 계획행정법연구, 비교행정법연구, 행정사법연구, 행정구제법연구, 행정법연구지도, 행정조직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비교행정법연구, 급부행정법연구, 부동산공법연구, 경제공법연구, 경찰행정법연구, 입법학, 입법방법론, 정보공법연구

제3영역: 사법학 계열

1. 민법(Civil Law) 전공

사법일반이론, 법률행위론, 법률행위특수문제연구, 채권법일반이론, 물권법일반이론, 불법행위론, 채권담보론, 물권법특강, 계약론, 채권법특수이론, 물권변동론, 동산물권법론, 용익물권법, 신탁법론, 불법행위특수문제연구, 민법총칙판례연구, 불법행위판례연구, 물권법판례연구, 계약법판례연구, 한국민사법제사 I, 한국민사법제사 II, 대륙민사법제사, 비교사법연구, 채권법특수연구, 채권법비교연구, 물권법비교연구, 독일사법일반이론, 영미사법일반이론, 영미계약법론, 독일계약법론, 영미재산법연구, 영미불법행위론, 독일불법행위론, 사회주의사법일반이론, 사회주의사법특수연구, 소비자신용법, 등기제도론, 불법행위판례연구, UN통일매매법, 특수매매법, 전자적 거래와 소비자보호, 기술적표준과법, 사이버시대의법률행위론, 정보화시대의재산권론, 물권법연구, 물권법특수연구, 소유권법연구, 환경사법론, 불법행위법연구, 특수불법행위연구, 비교사법연구, 재산법일반이론, 재산법특수연구, 재산법판례연구, 협동조합법, 비교협동조합법, 협동조합법세미나, 민법연구지도, 민법일반이론, 부동산사법연구, 계약법특수연구, 채권법연구, 채권법연구지도, 가족법일반이론, 친족법연구, 상속법연구, 혼인법연구, 비교양자제도론, 비교혼인법, 친족법특강, 상속법특수연구, 가족법판례연구, 친자법론, 비교가족법연구, 가족법특수연구

2.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전공

소송법과실체법, 소송과정론, 민사소송법사, 민사소송절차의기본원리, 민사소송법판례연구, 특별절차론, 소송물론, 민사입증책임론, 강제집행법, 중재법, 파산법, 비교상소제도론, 독일민사소송법, 일본민사소송법, 영미민사소송법, 섭외민사소송법, 민사재판제도의전자화, 정보사회와새로운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법일반이론, 민사소송법특수연구, 민사소송법세미나

제4영역: 형사법학 계열

1. 형사법(Criminal Law) 전공

형법의기본원리, 행위론연구, 구성요건론연구, 책임론연구, 형사판례연구, 외국형사판례연구, 영미형사법특강, 미수론연구, 공범론연구, 소년법, 행형학연구, 보안처분연구, 인신구속제도 연구, 형사정책연구, 형사학연구, 사이버공간과 형법, 한국형법사연구, 서양형법사연구, 형법이론의특수연구, 비교형법론, 독일형법연구, 형벌론연구, 형사입법의원리, 특별형법연구, 형사소송법일반원리, 형사소송법이론의특수연구, 형사증거법, 형사상소론연구, 수사이론, 신중증거의증거법상의 제문제, 사법제도개혁론, 독일형사소송법연구, 형사소송법연구지도, 형사소송법일반이론, 형사소송법특수연구, 형사소송법판례연구, 형사절차판례연구, 형사증거법연구, 비교형사소송법연구, 범죄사회학연구, 형법사연구, 형법연구지도, 형법일반이론, 형법철학연구, 형법특수연구, 형법판례연구, 비교형법연구, 비판범죄학연구, 소송법과실체법

제5영역: 기초법학 계열

1. 법철학(Legal Philosophy) 전공

법철학사, 고대·중세법철학사, 근대법철학, 현대법철학, 법철학 특수연구, 법철학연구강좌, 법철학세미나, 응용법철학연구, 법존재론, 법인식론, 법가치론, 자연법론, 법실증주의, 법과정의, 법과국가, 법여성학, 비판법학, 포스모던법이론, 법학방법론일반, 비교법학방법론, 해석학적법학방법론, 법률가의윤리, 법사상사연구, 법철학사연구, 법철학연구세미나, 법철학연구지도, 법철학일반이론, 법이론연구강좌, 법이론연구지도, 법논리학, 법수사학, 법원론, 권리론

2. 법사회학(Sociology of Law) 전공

법사회학일반, 법사회학연구, 법사회학특수연구, 법사상의사회학적 연구, 법사회학연구강좌, 법사회학세미나, 응용법사회학연구, 법사실조사방법론, 현대사회사상과법, 법인류학, 법의식과법감정연구, 법문화연구, 법과한국문화, 법과한국사회, 법사회학연구지도

3. 법사학(Legal History) 전공

법사상고전강독, 법사학방법론, 한국법제사, 동양법제사, 동양법사상사, 한국법사상사, 서양법제사, 로마법연구,

한국법제사특수연구, 동양법제사특수연구, 서양법제사특수연구, 로마법특수연구, 한국근대법사연구, 독일근대법사연구, 유럽근대법사연구, 법사학특수연구

제6영역: 특수법학 계열

1. 사회법(Social Law) 전공

사회법기초이론, 사회법일반연구, 사회법특수연구, 사회법특수문제연구, 사회입법론, 사회법정책론, 사회보장법일반이론, 사회보장법특수연구,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연구세미나, 사회보장법판례연구, 사회법연구강좌, 사회법연구세미나, 사회법연구지도, 사회법판례연구, 사회보장법연구, 노동법연구지도, 노동법일반이론, 노동법판례연구, 비교노동법연구, 근로기준법연구

2. 스포츠법(Sport Law) 전공

스포츠법학일반이론, 스포츠법특수연구, 스포츠법세미나, 국제스포츠법, 비교스포츠법, 스포츠법사회학, 스포츠법철학, 스포츠법의 방법론, 스포츠규칙과 법, 스포츠고유법연구, 스포츠단체법, 스포츠계약법, 스포츠책임법, 스포츠분쟁해결법, 스포츠제재법

3. 의료 및 생명공학법(Medicine & Bio-Technological Law) 전공

의료법학일반이론, 의료법학특수연구, 의료법학세미나, 의료기술법, 생명공학법, 의료법판례연구, 비교의료법연구, 의료법제사연구, 의료책임법특수연구, 의료범죄론연구, 생명공학법일반이론, 생명공학법특수연구, 생명공학법세미나, 비교생명공학법연구, 의료법연구지도, 생명공학법연구지도, 생명윤리와법, 생명공학과법

[별표2] 종합시험과목

1. 박사과정의 종합시험과목

공통기초과목	전공선택(4과목)			
법일반이론	전공선택1	전공선택2	전공선택3	전공외국어시험

2. 세부지침

가. 법일반이론 : 기초법학(본 내규 제3조 제2항 별표 1 참조)을 비롯하여 법학의 기초적 지식에 관한 시험

나. ‘전공선택1’, ‘전공선택2’ ‘전공선택3’의 전공영역 및 세부전공분야는 다음과 같다.

전공영역	세부 전공 분야
제1영역 글로벌 기업법학	상법, 지적재산권법, 조세법,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인터넷 및 정보기술법, 국제법, 국제사법, 비교법, 글로벌 기업법
제2영역 공법학 계열	헌법, 행정법
제3영역 사법학 계열	민법, 민사소송법
제4영역 형사법학 계열	형사법
제5영역 기초법학 계열	법철학, 법사회학, 법사학
제6영역 특수법학 계열	사회법, 스포츠법, 의료 및 생명공학법

1) 전공선택1 : 응시자의 세부전공분야의 일반이론

(예시) 헌법학분야의 전공자는 ‘헌법일반이론’, 민법분야(재산법)의 전공자는 ‘민법(재산법)일반이론’을 선택한다.

2) 전공선택2 : 응시자의 세부전공분야에서 개설된 과목으로서 응시자가 수강한 과목

(예시) 헌법학분야의 전공자는 헌법학분야에서 개설된 과목으로서 수강한 과목(예컨대, ‘기본권론’)을, 민법분야(재산법)의 전공자는 민법분야(재산법)에서 개설된 과목으로서 수강한 과목(예컨대, ‘불법행위판례연구’)을 선택한다.

3) 전공선택3 : 응시자의 세부전공분야와 동일한 전공영역 내의 다른 세부전공분야의 일반이론. 단,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세부전공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전공영역 내의 세부전공분야(이 분야의 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했을 것)의 일반이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시)상법분야의 전공자는 ‘제1영역 글로벌 기업법학’의 ‘지적재산권법’, ‘조세법’,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인터넷 및 정보기술법’, ‘국제법’, ‘국제사법’, ‘비교법’, ‘글로벌 기업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단, 상법분야의 전공자로서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사법학영역’의 ‘민법(재산법)일반이론’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응시자는 ‘민법분야(재산법)’에서 개설된 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했어야 한다).

다. 전공외국어시험 : 주임교수가 주관하는 법학관련 외국어시험으로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에서 택일하여야 한다.

[별표 3] 강의 및 논문지도교수 자격 기준

구분	자격기준
논문지도 교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문 사회계열 : 최근 3년 이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년평균 1편 이상의 논문게재실적 보유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학술서적실적 보유자(SSCI 및 A&HCI 논문 1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4배로 인정함) 2.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 최근 3년 이내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년평균 1편 이상의 논문 게재실적 보유자(임상교수제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학술서적실적 보유자 3. 예체능계열·시, 소설 등 창작분야 :인문사회계열의 학술지게재실적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연, 창작물(전문학술서적 포함)등의 실적보유자 4. 논문 중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편으로 인정하며 공동연구실적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 제7조 1항 별표 2를 적용함. 5.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상기 실적 이상의 요건을 대학원에 제출하는 학과는 학과에서 제출한 요건을 기준으로 함, 6. 위 각 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이 논문지도교수로 추천한 교수